

國際標準銀行慣習上の書類의 一致性 判斷基準

蔡 鎮 益*

-
- I. 序 言
 - II. 國際標準銀行慣習의 概念과 그 範圍
 - III. 書類의 一致性 判斷基準
 - IV. 書類別 一致性 判斷基準
 - V. 結 言
-

I. 序 言

國際間 貿易賣買는 政治的·經濟的·社會的·歷史的인 背景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國家에 속하는 遠隔地間 去來이기 때문에 物品引渡와 代金決濟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特性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空間的 障壁을 극복하기 위한 手段으로 賣渡人의 代金回收와 買受人의 約定物品의 入수를 보장하는 支給確約書라는 信用狀이 사용된다.

信用狀은 當事者間에 체결한 賣買契約에 대한 履行方法 중의 하나인 決濟方法이며, 國家間的 商慣習 및 慣例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일된 去來慣習을 확립하여 紛爭解決의 필요성에 의하여 확립된 國際標準銀行慣習이 信用狀統一規則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賣買當事者間的 信用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信用狀制度를 이용함으로써 그 確實性和 安全性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確實성을 保障받기 위해서는 提示書類가 信用狀의 條件과 嚴格一致하여야 한다. 즉, 信用狀去來에서 代金支給의 與否는 提示書類의 一致性 與否를 審査하여 결정한다. 그 一致性的 審査는 그 特性인 信用狀의 獨立·抽象性

* 湖原大學校 經濟通商學部 兼任教授.

의 原則에 의하여 物品去來 및 그와 관련되는 其他去來와는 관계없이 書類만 으로 審査하며, 또한 書類가 文面上 信用狀의 條件과 一致하여야 한다. 그러나 提示書類와 信用狀의 條件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여야 하는지 明確한 判斷基準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關係當事者間에 분쟁이 되어 왔다.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하여 UCP 500에서는 文面上 書類의 一致性 與否의 判斷은 “本 規則에 반영된 國際標準銀行慣習에 따른다.”는 문언을 도입하였지만, 그 表現의 모호성으로 여전히 紛爭可能性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本 考에서는 UCP 500에서 信用狀에서 요구한 提示書類가 信用狀의 條件과 어느 程度까지 일치하여야 하는지의 基準으로 도입한 國際標準銀行慣習上의 合理的인 書類의 一致性 判斷基準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判例를 중심으로 考察하였다.

II. 國際標準銀行慣習의 概念과 그 範圍

1. ‘國際標準銀行慣習’의 概念

UCP 500 第13條(a)에서는 銀行이 提示書類를 審査하는데 있어서 “文面上 信用狀의 條件과 書類의 一致性 與否는 本 規則에 반영된 國際標準銀行慣習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表現은 UCP 500의 改正作業을 담당하였던 ICC 銀行技術·實務委員會(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以下 ‘ICC 銀行委員會’라 稱함)의 改正作業部(Working Group)와 Kozolchyk 등 美國의 信用狀分野의 專門家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된 概念이다.¹⁾

여기서 ‘國際標準銀行慣習’이 含蓄하고 있는 의미는 國際的²⁾으로 널리 인정되어 오고 있으며, 信用狀 去來當事者들에 의하여 준수되어 온 慣習이다. 또한,

- 1) Boris Kozolchyk, “The Best Practices Approach to The Uniformit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The UCP 500 and The NAFTA Implementation Experience”, *Arizon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13, 1996, p. 446; 蔡鎮益, “信用狀의 書類審査基準으로서의 國際標準銀行慣習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 請求論文, 成均館大學校, 1998, 12 面.
- 2) UCP 500 第2條에서는 相異한 國家에 있는 한, 銀行의 支店은 이를 他行으로 간주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예컨대 서로 다른 國家에 있는 特定銀行의 本支店 또는 支店 間의 거래는 國際的인 것이다

國際標準銀行慣習은 ‘銀行慣習’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信用狀去來는 銀行이 중심이 되며, 최종적으로 제시되는 書類의 一致性의 判斷은 銀行의 書類審査者의 判斷에 의하여 決定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國際標準銀行慣習은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信用狀統一規則을 改正할 때마다 選別하여 반영되어 온 ‘常識的인 銀行實務’를 의미한다.³⁾ 이것은 ‘書類’에 대한 文面上 一致性 與否를 판단할 때에 적용하는 慣習만을 의미하고 있다.

ICC의 註釋에서도 國際標準銀行慣習이란 “결코 獨斷的(arbitrary)이거나 怠慢(neglect)하지 않고 不正直(dishonest)하지 아니한, 가장 正直하고 잘 확립되어 있으며, 또한 豫見可能한 慣習이 수용되는 規範을 의미하는 ‘常識的인 銀行의 實務’를 의미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銀行의 書類審査者가 提示書類를 審査할 때에 이러한 구체적인 狀況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書類審査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

2. 國際標準銀行慣習의 認定範圍

UCP 500 第 13 條 (a) 項에 “本 規則에 反映된”(reflected in these Articles) 이라는 文言은 信用狀統一規則의 條項이 書類上の 一致性 與否를 확인하기 위한 國際標準銀行慣習의 유일한 供給源으로 지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⁵⁾ 그러나 本 規則의 改正當時 반영되지 아니한 國際標準銀行慣習이 있으며, 또한 그 慣習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UCP 500에 반영되지 아니한 國際標準銀行慣習도 상당히 있다.⁶⁾ 여기서 本 條項의 意味를 嚴格하게 解釋할 경우에는, 科學技術의 發展에 따른 慣習의 變化에 效率的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本 條項에서 國際標準銀行慣習의 意味는, UCP 500에 규정된 明示的인 條項뿐만 아니라, 아직 UCP 500에 반영되지 않은 慣習도 包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⁷⁾

3) 浦野直義, 「金融法務事情」 第 1371 號, 1993, 35 面.

4) ICC Document No. 470-37/4, 1991. 5. 27 ; 서울地方法院 1996. 9. 12. 宣告, 92가합 19434 判決 等에서도 이 註釋을 援用하고 있다.

5)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Supp. No. 1, 1995, SA-22.

6) Joseph D. Gustavus,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114 *Banking Law Journal* 1, 1997, p. 62.

따라서 國際標準銀行慣習으로 인정되는 範圍는 ① UCP 500의 條項, ② UCP 500의 規則을 해석하는 ICC의 公表物,⁸⁾ ③ ICC 銀行委員會의 決定과 見解,⁹⁾ ④ ICC와 제휴하여 발간한 國內銀行協會의 見解 및 決定과 公表物,¹⁰⁾ ⑤ ICC의 의뢰에 따른 信用狀法에 관한 論文¹¹⁾과 이 分野의 專門家の 證言 및 見解¹²⁾를 포함한 부차적인 供給源도 이에 해당된다.¹³⁾

Ⅲ. 書類의 一致性 判斷基準

1. 嚴格一致性 原則의 適用

UCP 500 第13條에서는 ‘書類의 審査基準’(the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이라는 題目으로 書類提示보다는 書類 自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UCC 第5-108 (a)條는 開設人에게 “文面上 嚴格一致하는 ‘提示書類’를 受理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UCP 500 第13條 a項은 “信用狀에 規定된 ‘모든 書類’를 相當한 注意¹⁴⁾를 다하여, 信用狀의 條件(the terms and

7) Joseph D. Gustavus, *ibid.*

8) ICC,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Publication No. 511, 1994; ICC,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Publication No. 515, 1994. *The New Standard Documentary Credit Forms*, Publication No. 516, 1994 등이 이에 해당한다.

9) 이에는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4-1986; ibid.*, 987-1988; *ibid.*, 1989-1991; *ibid.*, 1995-1996;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1989; *ibid.*, 1991; *Case Studies on Documentary under UCP 500*, 등이 이에 해당한다(Boris Kozolchyk, “Towards New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The Methodology of the Proposed Revision”, *Commercial Law Annual*, 1991, p. 380).

10) USCIB에서 發刊하는 “White Book”이 이에 해당된다.

11) John F. Dolan, *The Laws of Letter of Credit: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 Warren, Gorham & Lamont, 1996, pp. 4-42; Joseph D. Gustavus, *op. cit.*, p. 67.

12) James E. Byrne, “UCP 500 Explored: The Standard of Care in Documentary Examination”, 7 *Letter of Credit Update* 6, 1991, p. 12.

13) UCC 第5編과는 달리 信用狀統一規則은 國際標準銀行慣習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地方慣習과 地域慣習을 배제시키는 것은 그 目的이 통일된 國際標準銀行慣習을 이루는데 있기 때문이다.

14) 우리 나라에서는 ‘reasonable care’에 대해 學者에 따라 ‘合理的 注意’ 또는 ‘相當한 注意’로 表現하고 있으나, ‘相當한 注意’가 지배적이다.

conditions)¹⁵⁾과 文面上(on their face)¹⁶⁾ 一致性(in compliance with)¹⁷⁾ 與否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條項을 비교하면, UCP 500의 審査基準은 UCC 第5編과는 달리 ‘書類 自體’로만 書類의 一致性 與否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UCP 500의 審査基準은 UCC 第5編이 규정하는 ‘書類提示’의 一致性의 範圍까지 더 확대하여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範圍가 UCC 第5編 보다 협소하다.¹⁸⁾

銀行에 제시된 書類와 信用狀의 條件과의 一致性 判斷은 提示書類의 受理 與否에 관련된 信用狀代金の 支給과 紛爭의 해결에 중요한 基準이 된다. 따라서 銀行에 제시되는 모든 書類는 信用狀의 條件과 文面上 엄격히 一致하여야 하며, 만약 그 書類가 信用狀의 條件과 文面上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銀行이 그 書類의 受理를 拒絶하여야 한다.¹⁹⁾ 즉, 銀行은 提示書類가 信用狀의 條件과 일치한 書類에 한하여 代金支給의 義務을 이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²⁰⁾ 國際商去來上の 代金決濟手段인 信用狀은 그 형식적인 嚴格性을 原則으로 하기 때문에 書類는 信用狀의 條件과 嚴格하게 일치하여야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²¹⁾

이러한 嚴格一致性의 原則²²⁾은 信用狀의 獨立·抽象性의 原則과 함께 信用

-
- 15) 信用狀에서 信用狀統一規則을 準據文言으로 삽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信用狀의 條件에는 信用狀統一規則도 포함된다. 따라서 書類의 信用狀의 條件과의 一致性 與否는 信用狀上에 명시된 條件 및 本規則上의 條項에 의하여 결정된다(東京銀行,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社, 1996, 121面).
- 16) “文面上”이라는 것은 어떤 意味인가. 이것은 UCP 500 第3條 및 第4條에 규정되어 있는 信用狀의 獨立·抽象性의 原則을 다른 表現으로 기술한 것으로서 銀行은 基礎契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書類의 外觀만을 보고 判斷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face’라는 것은 書類의 ‘後面’에 대한 ‘前面’이라는 意味가 아니다(ICC,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p. 39); 그러나 프랑스어 판은 ‘on their face’에 該當하는 文言이 없다고 한다(Raymond Jack, *Documentary Credit*, Butterworths, 1994, p. 143); 또한 文面上 一致性의 의미는 書類와 信用狀의 條件과의 一致性 與否 뿐만 아니라 제시된 書類 相互間의 連繫性까지 包含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시된 書類는 전체로써 審査·判斷하여 書類 相互間에 矛盾이 없어야 한다(ICC, *Decis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75-1979*, p. 23).
- 17) UCP 400까지 ‘in accordance with’의 表現보다 더 嚴格하다고 볼 수 있다.
- 18) Joseph D. Gustavus, *op. cit.*, p. 63.
- 19) *First Commercial Bank v. Gotham*, 64 N. Y.2d 287, 486 N.Y.S.2d 715 (1985).
- 20) Clive M. Schmitthoff, *Export Trade*, 9th ed., Stevens & Sons, 1990, pp. 404-405.
- 21) E.P. Ellinger,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1970, p. 279; ICC Documents No. 470/328, 470/390, 1978. 4. 14; Matti Kurkela, *Letter of Credit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UCC, UCP and Law Merchant, Oceana Publications Inc., 1985, p. 298.
- 22) UCP 500은 “嚴格一致”라는 表現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法院이 一致性을 判斷하는 原則으로 採擇한 實務上の 慣習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다. 즉, 嚴格一

狀去來의 가장 기초적인 原理이다. 英國의 Bailhache 判事는 *English, Scottish and Australian Bank Ltd. v. Bank of South Africa* 事件²³에서 “基本的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信用狀을 신뢰하여 船積하는 者는 信用狀의 條件을 嚴格히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銀行은 換어음과 添附書類가 信用狀의 條件과 嚴格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면, 信用狀에 기초하여 銀行에 제시된 換어음의 引受·支給을 이행할 義務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權利도 없다.”라고 判示하였다.

그리고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s Ltd.* 事件²⁴에서도 英國 貴族院의 Summer 卿은 “提示된 書類가 거의 同一하다거나, 또는 거의 正當할 것이라는 餘地는 없다. 다른 方向으로는 去來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없다.”라고 判示하였다. 이 判示는 매우 有名하다. 船積書類는 信用狀의 條件과 同一한(same) 것이어야 하며 거의 同一(almost same)하여서는 不充分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表現하고 있다.

또한 *Rayner(J.H) & Co., Ltd v. Hambros Bank Ltd.* 事件²⁵에서는 信用狀의 物品名이 ‘Coromandel groundnuts’이 船貨證券에는 ‘machine shelled groundnut kernels’으로 表記되어 있었다. 이에 Lord Justice Mackinnon 判事は 個別的 또는 全體의으로 書類가 信用狀의 條件과 嚴格一致하지 않으면 代金支給할 필요가 없다고 判示하였다.

한편 美國에서도 *Lamborn v. Lake Shore Banking Co.* 事件²⁶에서 뉴욕 最高法院의 Smith 判事は “信用狀에 기초하여 換어음을 발행할 權利를 가진 當事者는 信用狀의 條件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만 한다. 그 條件을 준수하는 條件으로 信用狀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信用狀의 條件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면 銀行이 그의 換어음의 引受·支給을 拒絕하여도 그는 銀行을 상대로 訴訟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判示하였다.

致性の 原則은 信用狀의 獨立性の 原則과 함께, 一致性 與否를 審査하는데 있어서 銀行은 書類上으로만 判斷하여야 한다는 原則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Henry Harfield, *Bank Credit and Acceptances*, 5th ed., Ronald Press, New York, 1974, pp. 70-73; Robert M. Rosenblith, “Letter of Credit Practice: Revisiting Ongoing Problems”, *Uniform Commercial Law Journal*, Vol. 24, 1991, p. 121).

23) 13 Ll. L. Rep. 21 (1922).

24) 27 Ll. L. Rep. 49 (1927).

25) (1942) 73 Ll. L. Rep. 32; (1943) Ll. L. Rep. 10(C.A).

26) 196 App. Div. (N.Y.) 504, 188 N.Y.Supp. 162 (1st Dept. 1921).

大法院에서도 1985. 5. 28. 宣告, 84다카697 判決에서 買受人의 所在地가 用狀條件은 'SEOUL KOREA'이었으나, 제시된 商業送狀에는 'Kyeong Gi-Do Korea'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에 그 商業送狀은 信用狀의 條件에 不一致하다고 判定하였다.

따라서 銀行은 書類를 수령한 후에 相當한 期間內에 相當한 注意를 다하여 書類만에 기초하여 그 書類가 信用狀의 條件과 文面上 일치한가를 심사하여야 할 義務가 있으며, 반면 受益者는 모든 書類를 信用狀의 條件과 일치하게 제시하여야 할 義務가 있다.²⁷⁾ 그러나 信用狀去來에서 銀行에게 書類의 嚴格한 審査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義務에는 文面上 信用狀條件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이른바 '形式的 審査義務'만을 의미하며, 결코 書類內容이나 效力에 관한 實質的 審査義務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嚴格一致性 原則의 適用範圍

(1) 書類의 一致性의 判斷基準

UCP 500 第 13 條 a 項에 “규정된 書類의 文面上 信用狀의 條件과의 一致性은 本 規則에 반영되어 있는 國際標準銀行慣習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書類의 一致性 與否의 判斷基準을 緩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書類上의 物品明細가 相互 矛盾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用語로 실질적으로 일치하면, 銀行은 書類가 비록 文面上 嚴格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를 受理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提示書類에 信用狀의 條件과 不一致한 事項이 있더라도 그것이 輕微하거나 附隨的인 것이어서, 제시된 書類만으로도 信用狀의 도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銀行은 이의 受理를 拒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흔히 '相當一致性의 原則'(the 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 또는 嚴格一致性의 緩和(softening the rigors of strict compliance)라고 稱한다.²⁸⁾

27) *Continental National Bank v.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 69. F. 2d 312 at 317 (1934).

28) Dolan 教授는 顧客이 損害를 입지 않았다면, 銀行이 嚴格一致性의 原則을 遵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原則을 濫용하여 主張할 수 없으며, 또한 비록 損害입었다는 것을 證明하더라도 立證된 損害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Dolan 教授가 二重基準의 原則을 옹호하면서 전개한 논리에 贊成하지만 모든 不當支給의

이와 같은 相當一致性的 原則은 信用狀條件의 字句上 의미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허용하고 다음과 같은 質問을 제기한다. 이런 離脫이 書類審査者의 마음에 不確實性을 招來하는가²⁹⁾ 또는 그 不一致가 書類審査者를 잘못 引導하여 그릇된 結論을 내리게 하였는가, 아니면 그 不一致가 書類審査者에게 損害를 입혔는가이다.³⁰⁾ 또한 다음과 같은 質問이 주어진다. 信用狀의 去來的인 狀況을 考慮한 후에 信用狀의 條件을 字句上으로 解釋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質問을 제기한다. 이에 일리노이주 地方法院은 *Crocker commercial Services Inc. v. Countryside Bank* 事件³¹⁾에서 書類審査者가 書類를 제시받을 당시에 그 書類上의 會社名이 변경된 同一한 會社의 受益者가 제시한 書類를 거절하는 것이 正當한가의 與否에서, 法院은 “關係會社가 同一하기 때문에 會社名의 변화는 ‘相當 一致性的 原則’에 의하여 不一致하지 않는다.”라고 判示하였다.

(2) 矛盾없는 一般的인 用語上의 不一致

商業送狀 이외의 모든 書類上에서 物品은 信用狀의 物品明細와 矛盾되지 아니하는 一般用語로 기재할 수 있다. 예컨대 信用狀의 物品明細는 “Clock Movement ‘O.K.’ BRAND QUARTZ CLOCK MOVEMENT WITH SWITCH”로 명시되어 있으나, 買入銀行에 제시된 船積書類(送狀, 船貨證券, 包裝明細書)에서는 “‘O.K.’ BRAND QUARTZ CLOCK MOVEMENT WITH SWITCH”로 표기되어 ‘Clock Movement’가 생략되어 있었다면, UCP 500에서 不一致한 것인가라는 質疑³²⁾에 대하여, ICC에서는 商業送狀 이외의 其他 書類에는 物品明細는 矛盾되지 아니한 일반用語로 表記할 수 있기 때문에 ‘Clock Movement’란 文言의 省略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當該 書類上에 ‘Clock Movement’가 생략된 것은 不一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有權解釋하였다.

이에 대한 判例로는 *Laudisi v. American Exchange National Bank* 事件³³⁾

경우에 이와 같은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하는 것에는 懷疑的이다(Boris Kozolchyk, “Strict Compliance and The Reasonable Document Checker”, *Brooklyn Law Review*, Vol. 56, 1990, p. 70).

29) *Datapoint Corp. v. M & I Bank*, 665 F. Supp. 722, 724 (W.D. Wis. 1987).

30) *First National Bank of Atlanta v. Wynne*, 149 Ga. App. 811, 817, 256 S.W.2d 383, 387 (1979); *Flagship Cruises Ltd. v. New England Bank*, 569 F.2d 699, 705 (1st Cir. 1978).

31) 538 F. Supp. 1360 (N.D. Ill. 1981); Boris Kozolchyk, *ibid.*, p. 69.

32)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p. 31.

에서는 信用狀에는 'Alicante Bouche grapes'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제시된 送狀에서는 'Alicante Bouche grapes'으로 되었으나, 船貨證券에는 단순히 'grapes'라고만 記述되어 있었다.³⁴⁾ 法院은 이것으로 充分하다고 判示하였다.

그리고 *Bank of Nova Scotia v. Angelica-Whitewater, Ltd* 事件³⁵⁾에서 캐나다 大法院은 一致性의 개념을 확대하여 全體 書類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동일한 物品임을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書類는 相互 一致한다고 判示하였다.

한편 大法院은 矛盾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用語에 대해 法院은 “文面上 連結의 缺乏이나 內容의 相衝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矛盾되지 않는다는 概念은 合致 또는 一致의 概念보다 넓은 符合의 意味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라고 判示하였다.³⁶⁾

(3) 輕微한 活字上的 誤謬로 인한 不一致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서류상의 物品明細는 信用狀의 條件에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物品明細가 信用狀의 條件과 一致하여야 하다는 것은 書類上的 字句가 完全하게 一致하여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字句에 약간 差異가 있다고 하더라도 相當한 注意를 다하면 그 差異가 輕微한 것으로서 文言上的 의미에 差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信用狀의 條件을 害하는 것이 아님을 文面上 알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信用狀의 條件과 合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³⁷⁾

예컨대 '些少(minor)한 活字上的 誤謬'가 UCP 500의 第13條 a項에서 不一致로 간주되는가 質疑³⁸⁾에서 a) 受益者의 住所上的 郵便코드가 '2056'인데 商業

33) 239 N.Y. 234, 146 N.E. 347 (1924).

34) 船貨證券은 商業送狀과는 달리 賣渡人 자신이 作成하는 것이 아니라, 運送人의 物品受領證으로 運送人은 수령한 運送品의 상세한 內容에 대해서까지는 알지 못하므로, 船貨證券上에 기재된 物品의 明細는 商業送狀보다도 간략한 일반적인 表現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35) (1987) 1 SCR 59, 99.

36) 大法院 1985. 5. 28. 宣告, 84다카696 判決 및 697 判決.

37) 大法院 1992. 2. 25. 宣告, 91다30026 判決 ; 大法院 1985. 5. 28. 宣告, 84다카696 判決 및 697 判決도 參照; 本 判決에서는 UCP 400 第41條 c項(UCP 500 第37條 c項)과 第43條 b項(UCP 500 第39條 b項; 5%의 偏差 許容條項)을 근거로 한, 信用狀統一規則에 充實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8)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p. 32; 活字上的 誤謬에 대한 判例로는 *New Braunfels National Bank v. Odiorne*, 780. W.2d 313(Tex.Ct.App. 1989) 事件에서 信用狀番號가 '86-122-5'인데 '86-122-S'로 기재한 서류 ; *Tosco Corp. v.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723 F.2d 1242(6th Cir

送狀에 '0256'으로記載되어 있고, b) AWB上에는受信者の姓이 'Chan'으로記載하여야 하는데 'Chai'로記載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c) AWB上에는受益者の住所 中에 'Industrial Park'라고記載되어야 하는데 'Industrial Parl'로記載되어 있었다. 이에 ICC는, 우선 a)는 우편코드는 단지郵便이기 때문에拒絕의事由가 될 수 없고, b)는 동일한住所일지라도 실제로 'Chai'라는姓을 가진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誤解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拒絕事由가 될 수 있다. 그리고 c)는 실제로住所가 'Industrial Parl'로 읽힐危險性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分명한 활자상의誤謬라고 하더라도不一致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UCP 500 第13條 (a)項의拒絕事由가 되는 것은 b) 뿐이다.

한편 大法院 1996. 7. 11. 宣告, 93가합50708 判決에서는 “原產地證明書에 기재된 컨테이너 番號 '#TPHU432841/#385003'은 商業送狀, 包裝明細書 및 船貨證券에 기재된 컨테이너 番號인 '#TPHU4392841/#385003'과는 다르지만, 이는 단순한誤打로 인한 것으로서, 달리信用狀의條件을害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文面上 바로 알 수 있으므로信用狀의條件에不一致한 것이 아니다.”라고 判示하였다.

여기서類推할 수 있는基準은 그러한些少한誤記나 또는省略이 전혀 다른 의미로誤解할可能性이 있는 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形式的인記載方式上的不一致

形式上 다른記載方法으로 인한不一致에 대해서는不一致한書類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컨대 두 개의書類가相互 다른形式의船積日字, 즉美國式表記形式인 月/日/年度와 유럽식形式인 日/月/年度와 같은 경우이다. 즉, 07/08/95와 8/07/95와 같은表記方式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書類를 '07/08/95' 이전에提示한 경우에船積日字가 '08.07.95'으로 표기된 경우이다. 이에 대해 ICC는形式이相互 다르게書類上에表記한日字는 95/08/07(1995年 8月 7日)과 같이 그것이英國式이든美國式이든 아니면 다른形式이든間에同一한日字를 의미하는 한, UCP 500 第13條 (a)項의拒絕事由가 되지 않는다는見解를 밝혔다.³⁹⁾

1983)에서 'L'을 '1'으로, 'Number'를 'No'로表記된 것에 대해法院에서는各各不一致事由에該當하지 않는다고判示한 바 있다.

39)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p. 33.

(5) 些少한 附加的인 記述上의 不一致

예컨대 原產地證明書에서 目的地를 'Incheon'으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Busan, Incheon'과 같이 表記된 경우도 단순한 情報로 제공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不一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理由는 目的地에 관한 그 情報은 부차적인 資料이지, 船貨證券上에 증명된 物品이 실제로 揚陸하는데 있어서 損害를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⁴⁰⁾

영국 抗訴法院서도 *Glen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事件*⁴¹⁾에서 書類上에 物品明細가 없다는 것과 다른 書類上에 동일한 物品明細의 表記 또는 그 物品에 대한 參照事項이 없다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된다고 判示하였다. 다른 書類上에 物品明細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明細가 表記되었다면, 이것은 信用狀의 條件에 일치한다는 것이다.

(6) 其他 事項

國際標準銀行慣習에서 about, approximately, circa 등의 表現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信用狀金額, 數量 및 單價에 대해서 10% 이내의 過不足을 허용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表現이 없더라도 信用狀金額을 超過하지 않는 條件으로 5%以內의 過不足을 허용하고⁴²⁾ 있는 것은 嚴格一致性의 原則에 伸縮性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各國의 判例도 嚴格一致性의 原則에서 합리적인 方向으로 점차 緩和되어 가는 傾向이 있다.

3. 信用狀條件과 UCP의 條項이 相衝되는 경우

開設된 信用狀에 UCP 500의 準據文言이 있는데도 信用狀에 있는 明示條件이 UCP 500과 矛盾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契約書上의 特殊條項은 一般條項에 우선한다.”라는 原則이 적용되어 信用狀上에 특별

40) ICC, *ibid.*, p. 20.

41) Court of Appeals, Nov. 8. 1995. Counsel has advised that the matter is on appeal to the House of Lords (Joseph D. Gustavus, *op. cit.*, p. 65).

42) UCP 500 Art. 39.

히 명시된 條件이 UCP 500에 우선한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信用狀上에 특별히 명시된 條件은 當事者が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交渉한 條項이기 때문에, 當事者が 特別히 考慮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UCP 500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⁴³⁾

이에 관해 *Royal Bank of Scotland plc. v. Casa di risparmio delle Provincie Lombard* 事件⁴⁴⁾에서 Mustill 卿은 “...信用狀統一規則의 效用을 無視하는 것은 아니지만 本 規定이 成文法の 法典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인식하여야 한다. 信用狀統一規則은 慣行과 慣例를 公式化한 것이며, 信用狀去來의 當事者は 本 規則을 원용함으로써 契約에 도입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특정한 義務를 중요한 契約條項으로 挿入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出發點으로서 분명한 것은 當事者間的 명시적인 합의이다. 만약 當事者が 이러한 條項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이상 명시할 필요가 없다. 信用狀統一規則에 反하는 어떠한 규정도 當事者の 명시적인 意思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重要な 事案에 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信用狀統一規則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信用狀에 관련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이 事件의 決定的인 것이 된다.”라고 判示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信用狀에 非書類條件이 명시되어 있고, 그 信用狀이 UCP 500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非書類條件과 UCP 500 第13條 c項의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라는 問題가 발생한다. 이론적으로는 當事者が 특별히 條文化한 규정이 一般條項인 UCP 500 보다도 우선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의 學者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경우에 國際的인 결정으로서의 信用狀統一規則을 尊重하여야 한다는 意見에도 타당성이 있다.⁴⁵⁾ 따라서 當事者が 반드시 非書類條件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명시적인 UCP 500 第13條 c項을 배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當事者の 의견은 明瞭하기 때문에 非書類條件이 확실하게 效力을 발휘할 것이다.

43) 1 A.G. Guest, General Editor, *Chitty on contract*, General Principles, paragraphs 826 and 833 (26th ed. 1989); 新堀 聰, 貿易取引, 日本經濟新聞社, 1998, 259面.

44) (1992) 1 Bank L R 251, 256.

45) Raymond Jack, *op. cit.*, pp. 149-150.

IV. 書類別 一致性의 判斷基準

1. 商業送狀

(1) 物品明細

UCP 500 第 37 條 c 項에는 “商業送狀上の 物品明細는 信用狀의 物品明細와 嚴格一致하여야 하지만, 그 외 其他 모든 書類上에서 物品은 信用狀의 物品明細와 矛盾되지 아니하는 一般用語로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嚴格一致性의 原則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商業送狀과 그 이외의 書類와는 다르다. 즉, 商業送狀(commercial invoice)은 買受人이 賣渡人에게 송부하는 物品明細書 및 代金請求書인 必須書類로써 기타 서류와는 달리 賣渡人이 직접 작성하여 買受人에게 송부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物品에 대한 記述은 文字上 字句에 이르기까지 信用狀의 條件과 嚴格一致할 필요가 있다. 신중한 受益者는 信用狀上の 物品明細가 그 가 알고 있는 送狀慣習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受益者는 送狀慣習에 拘束받지 않고, 受領한 信用狀上の 物品明細와 一致하도록 商業送狀을 作成하도록 지시한다.⁴⁶⁾

예컨대 *National City Bank v. Seattle National Bank* 事件⁴⁷⁾에서 開設銀行

46) John F. Dolan, *op. cit.*, p. 6-04; *Accord Samuel Rappaport Family Partnership v. Meridian Bank*, 26 UCC Rep. Serv. (Callaghan) 474(Pa. Super. 1995), 送狀에서 物品明細는 信用狀上の 物品明細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原則은 약간의 이탈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信用狀 또는 送狀에서의 文言은 기술적이지 아니할 수 있다. *Astro Exito Navegacion SA v. Chase Manhattan Bank NA*, (1986) 1 Lloyd's Rep. 455 (QB), 信用狀에서는 船舶은 외양선박이어야 하고, 그 船舶은 “自力으로 도착되어야 하며, 항상 안전하게 航海하고 損傷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規定되었다. 이에 대해 法院은 인용된 文言은 物品明細의 일부분이 아니며, 그 送狀에서의 그 文言의 不備는 不一致한 送狀提示가 아니라고 判示하였다. *Integrated Measurement Sys., Inc. v.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 757 F. Supp. 938 (ND Ill. 1991), 送狀에서 挿入文言으로 物品明細의 末尾에 추가된 ‘Detail per P/O No. 120288’라는 文言은 挿入할 필요가 없다고 判示하였다. 그리고 *Axxess, Inc. v. Rhode Island Hosp. Trust Nat'l Bank*, 15 UCC Rep. Serv. 2d (Callaghan) 1011 (D. Mass. 1991) 事件에서 法院은 物品明細와는 獨立된 送狀上の 追加的인 文言은 不一致한 送狀이 아니라고 判示하였다. 그러나 *Sunlight Distribution, Inc. v. Bank of Communications*, 94 Civ. 1210 (SDNY Feb. 7, 1995) 事件에서 法院은 信用狀에 기술된 그 製品의 構成要素에 관련된 불필요하고 誤解餘地가 있는 情報가 포함된 것은 一致하지 않는 送狀이라고 判示하였다.

은 “설탕에 대하여 거의 또는 전혀”⁴⁸⁾ 모르거나, 또는 信用狀을 이용하는 다른 産業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다. 따라서 信用狀法은 그러한 知識을 알아야 할 責任을 銀行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判示하였다. *J.H. Rayner & Co. v. Hambros Bank, Ltd.* 事件⁴⁹⁾에서도 英國法院은 信用狀이 塲콩의 船積을 促進하더라도, 그 信用狀은 “賣買에 있어서 어떠한 去來에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塲콩을 去來하는 當事者者들의 慣習에 拘束받지 않는다”고 判示하였다. 法院은 信用狀의 獨立性的의 原則에 따라 그 基礎가 되는 賣買去來와는 獨立되어 있다고 設施하였다.

法院은 信用狀에서 (1) ‘California Whites Petaluma extras’을 요구하였는데, 送狀은 ‘Petaluma Ranch extras’으로 記載되었다.⁵⁰⁾ (2) 信用狀은 ‘ladies sweaters, dresses, pants and skirts’을 요구하였는데, 送狀은 ‘woolen knitwears’으로 記載되었다.⁵¹⁾ (3) 信用狀은 ‘100% acrylic yarn’을 요구하였는데, 送狀은 ‘imported acrylic yarn’ 등으로 明示되었을 경우에(包裝明細書가 不充分的 送狀을 補完하더라도)⁵²⁾ 送狀은 信用狀의 條件을 充足시키지 못한다고 判示하였다. *Davidcraft Corp. v. First National Bank* 事件⁵³⁾에서 法院은 信用狀에서 物品을 ‘52 ceiling fan.’으로 規定하고 있는데, ‘52+ ceiling fan’으로 記載되어 있는 受益者의 送狀은 不一致하다고 判示하였다.

(2) 其他事項

UCP 500 第37條 (a)에서는 信用狀에 別途의 規定이 없는 한, 送狀은 開設 依頼人의 名義로 작성되어야 하며, 第3者가 아닌 信用狀에서 지정된 受益者의 名義로 발행되어야 한다.⁵⁴⁾ 그리고 署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同規則 第37條 (b)에서는 送狀金額은 信用狀에 明示된 金額을 超過할 수 없도록 하고

47) *National City Bank v. Seattle National Bank*, 121 Wash. 476, 209 P. 705 (1922).

48) *Ibid.*, at 482, 209 P. at 707.

49) *JH Rayner & Co. v. Hambros Bank, Ltd.*, (1942) 2 All ER 694 (CA).

50) *Portugues-Am. Bank v. Atlantic Nat'l Bank*, 200 AD 575, 575-576, 193 NYS 423, 423-424 (1922).

51) *Oriental Pac. (USA), Inc. v. Toronto Dominition Bank*, 78 Misc. 2d 819, 820, 357 NYS 2d 957, 958 (Sup. Ct. 1974).

52) *Courtaulds N. Am., Inc. v. North Carolina Nat'l Bank*, 528 F2d 802, 803 (4th Cir. 1975).

53) *Davidcraft Corp. v. First National Bank*, No. 83 C. 5481 (ND Ill. Jan. 6, 1986).

54) 그러나 이 規則에 例外가 있다. UCP 500 Art. 48 (i)의 讓渡條項이 그것이다.

있다. 예컨대 *Oriental Pacific (U.S.A.), Inc. v. Toronto Dominion Bank* 事件⁵⁵⁾에서 法院은 信用狀金額은 USD37,919.41 이었으나, USD39,206.26으로 作成된 送狀은 不一致하다고 判示하였다. *Oriental Pacific* 事件에서 受益者는 이용가능한 金額을 超過한 金額에 대하여 支給請求하지 않았다. 즉, 換어음은 信用狀金額과 같은 金額이었으나, 이와 달리 送狀金額은 換어음상의 金額 보다 컸다. 따라서 이것은 UCP 400에 의하여 受益者의 不一致한 提示가 된다.

그러나 同條項이 改正되어 UCP 500 第37條 (b)⁵⁶⁾에서는 銀行은 信用狀에서 허용된 最高의 金額을 超過하여 作成된 送狀은 支給拒絶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同條項은 開設銀行이 허용된 信用狀金額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開設銀行에게 그 送狀의 受理를 허용한다. *Oriental Pacific* 事件에서 開設銀行이 信用狀金額을 초과한 換어음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UCP 500에 따라 開設銀行은 그 送狀을 受理할 것인가 또는 拒絶할 것인가에 대한 裁量權을 가진다.⁵⁷⁾

그동안 判例에 의하면 商業送狀 또는 其他 다른 種類의 送狀과 관련하여 많은 副次的인 問題가 발생하였다. 예컨대 *Key Appliance, Inc. v. First National City Bank* 事件⁵⁸⁾에서는 信用狀에서 買受人이 賣渡人의 送狀에 確認署名을 要求하였기 때문에, 賣渡人인 受益者에게는 불리하였다. 買受人은 確認署名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賣渡人이 信用狀條件에 一致시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開設依頼人인 買受人이 支給禁止命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⁵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Key Appliance* 事件의 法院에서는 受益者는 信用狀의 條件에 일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開設依頼人의 署名이 없는 送狀

55) *Oriental Pacific (U.S.A.), Inc. v. Toronto Dominion Bank*, 78 Misc. 2d 819, 357 NYS2d 957 (Sup. Ct. 1974).

56) 信用狀에 別途의 規定이 없는 한, 銀行은 信用狀에 의하여 허용된 金額을 초과한 金額으로 作成된 商業送狀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信用狀에 支給, 延支給 約定, 換어음의 引受 또는 買入하도록 授權된 銀行이 그러한 送狀을 受理하는 경우에는, 그 銀行의 決定은 모든 當事者를 拘束한다. 단, 그 銀行이 信用狀에서 허용된 金額을 초과한 金額으로 이미 支給, 延支給 約定, 換어음의 引受 또는 買入하지 않았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UCP 500 Art. 37 (b)).

57) *State v. Morganstein*, 703 SW2d 894 (Mo. 1986)에서 法院은 信用狀金額을 초과하는 어음은 不一致한 提示라고 判示하였다. 한편 UCP 500 第40條는 信用狀에서 分割어음의 發行을 禁止하지 아니하는 한, 開設銀行은 信用狀金額 보다 적게 발행된 어음도 支給할 수 있다고 明確히 규정하고 있다.

58) *Key Appliance, Inc. v. First Nat'l City Bank*, 46 AD2d 622, 359 NYS2d 886 (1974).

59) *Coporation De Mercadeo Agricola v. Mellon Bank Int'l*, 608 F2d 43, 45 (2d Cir. 1979); *Astro Extio Navegacion SA v. Southland Enter. Co.*, (1983) 2 All ER 725 (HL).

을 제시한 것은 支給拒絶의 事由가 된다고 判示하였다.

Kelly-Springfield Tire Co. v. Dakota Northwestern Bank, N.A 事件⁶⁰⁾에서는 'Hoffman and Mosbrucker'를 買受人으로 하는 物品을 寄託하는 送狀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受益者는 'Mosbrucker/Dakota Tire Co.'를 買受人으로 하는 送狀을 제시하였다. 이에 法院은 信用狀의 條件을 변경하고자 시도하였던 受益者에게 支給拒絶을 인정하였다.⁶¹⁾

Fina Supply, Inc. v. Ablene National Bank 事件⁶²⁾에서 法院은 信用狀에서 商業送狀을 要求하였는데, 見積送狀을 提示하는 것은 不一致한 것이라고 判示하였다. 그러나 *Borg-Warner Acceptance Corp. v. Tascosa National Bank* 事件⁶³⁾에서는 法院은 信用狀에서 送狀을 要求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送狀을 제시할 必要가 없다고 判示하였다.

Ward Petroleum Corp. v. FDIC 事件⁶⁴⁾에서 信用狀은 送狀과 'balance proper and past due'를 陳述한 證明書를 要求하였으나, 受益者는 送狀과 'the now known balance proper and past due'으로 陳述된 證明書를 제시하였다. 이에 開設銀行은 書類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支給拒絶하였다. Ward 法院은 그 紛爭은 書類의 一致性에 관한 紛爭이 아니라 거래에 있어서의 詐欺의 問題로 判斷하여 棄却하였다.

英國의 判例⁶⁵⁾에서는 銀行의 書類審査者는 967개의 書類를 審査하여야 하는 어려운 狀況에 直面하였다. 이와 같은 書類提示를 要求하는 거래에 참여하는 當事者는 履行不可能한 信用狀을 要求한 것이다. 따라서 書類審査者가 提示 書類가 일치하다고 결정하면 法院은 그 決定을 따라야 한다. 複雜한 信用狀을 이용하는 去來當事者 즉, 開設依頼人, 受益者는 信用狀去來를 單純化하지 아니 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責任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⁶⁶⁾

60) *Kelly-Springfield Tire Co. v. Dakota Northwestern Bank, N.A.*, 321 NW2d 516 (ND 1982).

61) *Cf. Texpor Traders, Inc. v. Trust Co. Bank*, 720 F. Supp. 110 (SDNY 1989): Atlanta 住所 대신에 開設依頼人 住所인 Lyons, Georgia를 이용한 受益者의 住所에 있어서 號室番號를 생략하고, 購買注文書에 언급되어 있는 開設依頼人의 住所上의 한 單語를 생략된 送狀을 寄託하였다.

62) *Fina Supply, Inc. v. Ablene Nat'l Bank*, 726 SW2d 537 (Tex. 1987).

63) *Borg-Warner Acceptance Corp. v. Tascosa Nat'l Bank*, 784 SW2d 129 (Tex. Ct. App. 1990).

64) *Ward Petroleum Corp. v. FDIC*, 903 F2d 1297 (10th Cir. 1990).

65) *Bankers Trust Co. v. State Bank of India*, (1991) 1 Lloyd's Rep. 587 (QB), appeal dismissed, (1991) 2 Lloyd's Rep. 443 (CA).

Ultra Scope International, Inc. v. Extebank 事件⁶⁷⁾에서 法院은 有效期日 이전에 商業送狀을 提示하여야 하며, 그 商業送狀은 期日이 경과될 수 있다는 어떠한 附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判示하였다.⁶⁸⁾

2. 換어음

UCP 500 第 9 條는 換어음에 의한 代金請求가 아닌 다른 方法으로도 信用狀이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信用狀에서 換어음을 要求한다면 受益者는 追加的인 書類로 提示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不一致한 提示가 된다. 예컨대 *Bounty Trading Corp. v. S.E.K. Sportswear, Ltd* 事件⁶⁹⁾에서, 法院은 推尋書類의 Letter⁷⁰⁾는 換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不充分하다고 判示하였다. 한편, *Chase Manhattan Bank v. Equibank* 事件⁷¹⁾에서는 ‘please remit’라는 文言을 포함하고 있는 텔렉스는 一覽給 換어음을 요구한 信用狀의 要件을 充足시킨다고 判示하였다. *First State Bank v. Shuford Mills Inc* 事件⁷²⁾에서 法院은 信用狀에서 換어음이 流通可能한 形式으로 발행되어야 한다고 明示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受益者는 流通不可能한 換어음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判示하였다.

信用狀에서 흔히 “換어음에 First National Bank L/C No. 123에 따라 발행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文言의 表記를 요구한다. 受益者가 이와 같은표기를 적절하게 插入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컨대 *Tosco Corp. v. FDIC* 事件⁷³⁾에서 信用狀은 다음과 같은 文言의 表記를 포함하는 換어음을 요구하였다. 즉, “[D]rawn under Bank of Clarksville Letter of Credit Number

66) UCP 500 Art. 5 (a) (i).

67) *Ultra Scope International, Inc. v. Extebank*, 599 NYS2d 361 (Sup. Ct. 1992), appeal denied, 622 NE2d 304 (NY 1993).

68) UCP 500 Art. 43.

69) *Bounty Trading Corp. v. S.E.K. Sportswear, Ltd.*, 48 AD2d 811, 370 NYS2 D 4 (1975).

70) 買入銀行에서 開設銀行 앞으로 書類를 발송할 시에 書類의 買入狀況, 書類明細, 信用狀番號, 受益者, 開設依頼人, 不一致事項 등 買入書類에 관한 全般的인 情報와 代金決済에 관한 指示를 明示한 것이다.

71) *Chase Manhattan Bank v. Equibank*, 394 F. Supp. 352 (WD Pa. 1975).

72) *First State Bank v. Shuford Mills Inc.*, 716 SW2d 649 (Txt. Ct. App. 1986).

73) *Tosco Corp. v. FDIC*, 723 F2d 1242 (6th Cir. 1983).

105.” 이었다. 그러나 受益者는 다음과 같은 다른 文言으로 표기한 換어음을 提示하였다. 즉,

1. 'Clarksville;' 다음에 'Tennessee'를 追加하였다.
2. 'Letter of Credit;'에서 大文字 'L' 대신에 小文字 'l'를 사용하였다.
3. 그리고 'Number'를 'No'으로 縮約하였다.⁷⁴⁾

Tosco 法院은 不一致의 事由가 되지 않는다고 判示하였다. 아마도 위와 같은 部分的인 不一致의 성격 때문에 嚴格一致性의 原則 보다는 相當一致性의 原則을 採擇한 것 같다. 그러나 嚴格一致性의 原則下에서도 이 換어음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嚴格一致性의 原則의 根據는 開設銀行이 書類上에 있는 不一致의 商業的인 影響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嚴格一致性의 原則下에서 銀行의 書類審査者는 'dried grapes'가 'raisins'과 같은 것인지를 判斷할 필요가 없으며, 'C.I.R.'이 Coromandel groundnuts를 意味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이러한 問題는 開設銀行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한 것이다. 本 事件에서 이러한 種類의 些少한 不一致는 嚴格一致性의 原則의 理論的 根據를 毀損하지 않는다.⁷⁵⁾

First Bank v. Paris Savings & Loan Ass'n 事件⁷⁶⁾에서 受益者는 換어음상에 日字와 信用狀金額을 追加하였다. 法院은 이와 같은 換어음은 一致한다고 判示하였다. 이것은 開設銀行에게 混沌 또는 損害를 끼치지 않거나 또는 詐欺와 같은 結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法院은 受益者가 嚴格一致性의 原則을 違反하지 않았다고 判示하였다.⁷⁷⁾

換어음은 適期에 提示되어야 한다.⁷⁸⁾ 信用狀에서 日常的으로 要求하듯이 適

74) *Tosco Corp. v. FDIC*, 723 F2d 1247 (6th Cir. 1983).

75) UCC(1995)에서는 嚴格一致性의 原則을 採擇하고 있다.

76) *First Bank v. Paris Savings & Loan Ass'n*, 756 SW2d 329 (Tex. Ct. App. 1988).

77) *Datapoint Corp. v. M&I Bank*, 665 F. Supp. 722 (WD Wis. 1987) 事件에서 法院은 換어음상에 標題를 빠트린 것은 不一致한 提示라는 開設銀行의 主張에 동의했으나, 有效期日 이전에 一致한 書類를 제시할 수 있도록 電話로 迅速하게 不一致事項에 대하여 受益者에게 通知하지 않은 것은 그 不一致를 主張할 權利를 喪失한다고 判示하였다.

78) *Banco Tornquist, SA v. American Bank & Trust Co.*, 71 Misc. 2d 874, 337 NYS2d 489 (Sup. Ct. 1972) 事件에서 受益者가 早期에 제시한 換어음과 마찬가지로, 遲延된 換어음은 一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Landmark Bank v. NCUAB*, 748 F. Supp. 709 (ED Mo. 1990) 事件에서 受益者는 信用狀에서 허용된 以前에

法한 去來를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受益者는 어음발행인으로서 自身の 署名을 표기하여야 한다.⁷⁹⁾ 예컨대 信用狀에서 두 保險會社가 가입하도록 開設된 경우에, 한 保險會社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信用狀條件이 充足되지 않는다.⁸⁰⁾

Ufitec, S.A. v. Trade Bank & Trust Co. 事件⁸¹⁾은 受益者가 開設銀行의 換去來銀行의 職員의 面前에서 換어음상에 署名할 것을 要求한 旅行者信用狀에 관한 事件이다. 換어음發行人의 署名과 受益者의 見本署名을 對照確認하여 換어음의 署名이 실제로 受益者의 署名이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受益者가 署名節次에 의하지 않고 제시한 換어음은 瑕疵가 있다고 判示하였다.

3. 運送書類

運送書類는 運送方式別로 海上船貨證券, 海上貨物運送狀, 備船契約附船貨證券, 複合運送書類, 航空運送書類, 道路/鐵道/內水路 運送書類, 郵便受領證/特使受領證 등으로 구분된다.⁸²⁾ 여기서는 船貨證券⁸³⁾에 相關한 判例를 中心으로 다룬다.

Board of Trade v. Swiss Credit Bank 事件⁸⁴⁾에서 文言 'full set clean on board bill of lading'이 航空運送業者를 포함하는지를 判斷하는데 있어서, 審理法院은 開設銀行의 支給拒絶을 지지했고, 抗訴法院인 巡迴法院은 電子直接回路를 海上이 아닌 航空으로 船積한 것이 실질적인 離脫인지를 判斷하는 것은 開設銀行의 書類審査者에 달려 있지 않다고 判示하였다.⁸⁵⁾ 法院은 信用狀의 條

換어음을 提示하였으나, 후에 適切한 방법으로 換어음을 다시 제시하였다. 이에 法院은 早期에 처음 提示한 換어음은 그 후에 제시한 換어음과 矛盾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에 제시한 換어음은 信用狀의 條件을 充足시킨다고 判示하였다.

79) *North Valley Bank v. National Bank*, 437 F. Supp. 70 (ND Ill. 1977), 換어음의 背書는 署名要件을 充足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開設銀行이 그 換어음을 支給한다고 한 銀行의 陳述書는 禁反言이 成立한다. *Bank of NY & Trust Co. v. Atterbury Bros.*, 226 AD 117, 234 NYS 442 (1929), aff'd, 253 NY 569, 171 NE 786(1930), 法院은 'A. James Brown'에 의하여 署名된 換어음은 'Arthur James Brown.'에 의하여 발행된 換어음을 要求하는 信用狀條件을 充足시키지 못한다고 判示하였다.

80) *Occidental Fire & Casualty Co. v. Continental Ill. Nat'l Bank & Trust Co.*, 718 F. Supp. 1364 (1989), aff'd, 918 F2d 1312 (7th Cir. 1990).

81) *Ufitec, S.A. v. Trade Bank & Trust Co.*, 12AD2d 187, 249 NYS2d 557 (1964), aff'd, 16 NY2d 698, 209 NE2d 551, 261 NYS2d 893 (1965).

82) UCP 500 Art. 23~29에 規定된 要件에 充足되어야 한다.

83) 船貨證券은 貨物의 權利證券, 有價證券 및 運送契約의 證憑書類이다.

84) *Board of Trade v. Swiss Credit Bank*, 597 F2d 146 (9th Cir. 1979).

件을 嚴格하게 이행하여야 할 開設銀行에게 그러한 義務를 負擔시켜서는 안된다고 判示하였다.⁸⁶⁾

Marine Midland Grace Trust Co. v. Banco Del Pais, S. A., 事件⁸⁷⁾에서 法院은 受益者가 'on-board'의 스템프가 있는 船貨證券을 提示하지 않은 抗辯을 棄却하였다. 信用狀에서는 'on-board' 스템프를 요구하였으나, 멕시코 특령업계는 그러한 形式으로 船貨證券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證憑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法院은 그 瑕疵에 대한 抗辯을 棄却하였다.

The Board of Trade and Marine Midland 事件에서 業界慣習에 관한 信用狀去來의 原則이 실증되었다. 開設銀行은 銀行慣習에 관한 知識에는 責任 있으나, 基礎契約으로부터 발생하는 業界慣習에는 責任이 없다는 것이다.⁸⁸⁾

Laudisi v. American Exchange National Bank 事件⁸⁹⁾에서는 船貨證券에서의 物品明細는 信用狀上の 物品明細와 矛盾되지 않는 한, 信用狀上の 物品明細와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判示하였다. 또한 *Camp v. Corn Exchange National Bank* 事件⁹⁰⁾에서 船貨證券을 審査하는 銀行은 그 것을 拒絕할 것인지를 決定하는데 있어서 信義誠實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判示하였다.

Voest-Alpine International Corp v. Chase Manhattan Bank, N.A. 事件⁹¹⁾에서 法院은 開設銀行이 1981年 1月 31日字 船積船貨證券과 2월에 船積되었다는 것을 陳述하고 있는 檢査證明書가 첨부된 換어음을 支給拒絕한 것은 정

85) *Board of Trade v. Swiss Credit Bank*, 728 F2d 1241 (9th Cir. 1984); 類似한 *First State Bank v. Diamond Plastics Co.*, 891 P2d 1262 (Okla. 1995)에서 法院은 작성된 書類의 性格을 결정하기 위하여 基礎的인 義務를 調査하는 것은 開設銀行의 義務가 아니며, 信用狀에서 流通可能한 船貨證券을 要求하였는데 非流通船貨證券을 제시한 것은 嚴格-一致性의 原則을 充足시키지 못한다고 判示하였다.

86) *Integrated Measurement Sys., Inc. v.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 757 F. Supp. 938 (ND Ill. 1991), 法院은 船貨證券上の 어떠한 附記가 肉筆이었기 때문에 그 船貨證券은 不-一致하거나 또는 UCP 400 第34條에 違反된다는 開設銀行의 主張을 棄却하였다.

87) *Marine Midland Grace Trust Co. v. Banco Del Pais, S. A.*, 261 F. Supp 884 (SDNY 1966).

88) UCC(1995) §5-108(f)(3); UCC(1962) §5-109(1)(c); *Marino Indus. Corp. v. Chase Manhattan Bank*, NA, 686 F2d 112 (2d Cir. 1982).

89) *Laudisi v. American Exchange National Bank*, 239 NY 234, 146 NE 347 (1924).

90) *Camp v. Corn Exchange National Bank*, 285 Pa. 337, 132 A. 189 (1926); *Cooper's Finer Foods, Inc. v. Pan Am. World Airways, Inc.*, 178 So. 2d 62(Fla. Sist. Ct. App. 1965), 開設銀行은 非流通航空貨物運送狀을 添附한 換어음을 正當하게 支給하여야 한다고 判示하였다.

91) *Voest-Alpine Int'l Corp v. Chase Manhattan Bank*, NA, 545 F. Supp. 301 (SDNY 1982), aff'd in part, 707 F2d 680 (2d Cir. 1983).

당하다고 判示하였다. 그 信用狀은 1月 31日 이전의 日字로 발행된 船貨證券을 요구하였다.

Beyene v. Irving Trust Co. 事件⁹²⁾에서 法院은 確認銀行이 當事者의 名義가 'Sofan' 대신에 'Soran'으로 綴字가 오기된 船貨證券을 포함한 서류의 제시에 대해 支給拒絶한 것은 正當하다고 判示하였다. 抗訴法院은 本 事件에서 그러한 誤謬는 타이핑상의 明白한 誤謬와는 구별된다. 또한 書類審査者는 그 不一致로 인하여 Mr. Sofan에게 通知할 수 없었던 充分한 事由였는지 알 수 있는 方法이 없었다고 判示하였다.

더욱이 *Austracan (USA) Inc. v. Neptune Orient Lines, Ltd.*, 事件⁹³⁾에서는 法院은 開設銀行은 그 表記가 船貨證券上の 다른 記述과 矛盾된다는 當該業界의 知識에는 責任이 없기 때문에, 船貨證券을 正當하게 수리하였다고 判示하였다. *Pro-Fab, Inc. v. Vipa, Inc.*, 事件⁹⁴⁾에서 受益者는 백투백 信用狀의 約定에서 原信用狀과 관련하여 開設銀行을 所有者로 하는 船貨證券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法院은 그 證券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不一致한 事由가 되기 때문에, 支給拒絶한 것은 正當하다고 判示하였다.

Davidcraft Corp. v. First National Bank 事件⁹⁵⁾에서 信用狀은 'FOB vessel, Taiwan Port.'로 하는 契約의 船貨證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受益者는 'FOB Baltimore.'를 船積條件으로 하는 船貨證券을 제시하였다. 法院은 그 不一致는 開設依頼人에게 유리한 것(favoring)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그 船貨證券은 不一致하지 않다고 判示하였다. *Davidcraft* 事件에서는 銀行의 書類審査者가 不一致의 效果, 不確實한 結果에 대한 知識에 責任이 있는 경우에만 嚴格一致性의 原則이 適用되었다. 그러나 *Bank of Nova Scotia v. Angelica Whitewear Ltd.*, 事件⁹⁶⁾에서 法院은 契約條件이 CIF Montreal로 규정하고 있

92) *Beyene v. Irving Trust Co.*, 762 F2d 4 (2d Cir. 1985), 法院은 混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信用狀書類는 性을 포함한 이름은 嚴格一致하여야 한다는 것은 必須的이라고 判示하였다; *Barnett Bank, NA v. Westbrook Atkinson Realtors*, 564 So. 2d 570 (Fla. Dist. Ct. App. 1990).

93) *Austracan (USA) Inc. v. Neptune Orient Lines, Ltd.*, 612 F. Supp. 578 (SDNY 1985).

94) *Pro-Fab, Inc. v. Vipa, Inc.*, 772 F2d 847 (11th Cir. 1985).

95) *Davidcraft Corp. v. First National Bank*, No. 83 Civ. 5481 (ND Ill. Jan. 6, 1986); cf. *Banque Worms v. Banque Commercial Privee*, 679 F. Supp. 1173 (SDNY 1988), aff'd per curiam, 849 F2d 787 (2d Cir. 1988), 信用狀統一規則에 의하면 信用狀에서 基礎去來에 대한 일반적인 參照事項은 信用狀의 貨換要件에 追加되지 않는다(UCP 500 Art. 3).

96) *Bank of Nova Scotia v. Angelica Whitewear Ltd.*, 36 DLR4th 161 (Can. 1987).

는 信用狀下에서 揚陸港口를 Vancouver로 記載하고 있는 船貨證券은 不一致하다고 判示하였다.

Westpac Banking Corp. v. South Carolina National Bank 事件⁹⁷⁾에서 信用狀은 船積船貨證券을 要求하였다. 開設銀行은 ‘船積’이라는 表記가 있는 修正된 “受取船貨證券”은 不一致하다고 訴訟을 提起하였다. 그러나 樞密院의 司法委員會는 그러한 船貨證券은 信用狀의 條件에 一致한다고 判示하였다. 또한 法院은 船貨證券上에 ‘loaded-on-Board’라는 스탬프인은 本質的으로 不一致한 제시가 아니며, 開設銀行의 支給拒絶의 事由가 되지 않는다고 判示하였다.

V. 結 言

信用狀去來慣習은 信用狀統一規則이 制定된 이후 國際運送手段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른 複合運送의 一般化, 書類의 電子文書化, 電子商去來의 出現 등 國際貿易環境의 變化過程에서 形成·發展되어 왔다. 그러나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書類審査基準으로서 確立·發展하여 온 國際標準銀行慣習은 새로운 審査基準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意義가 있으나, 實務上으로는 아직도 書類의 受理 與否를 결정하기 위한 一致性 與否의 判斷에 있어서 많은 問題點이 存在하고 있다.

그러므로 現實의이고 效用있는 書類의 一致性 判斷基準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信用狀 去來當事者 모두가 투명하게 豫見할 수 있도록 그 範圍를 具體化하고 單純化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狀況에서 현실적인 對案으로 考慮할 수 있는 現在 國際標準銀行慣習으로 인정하고 있는 ICC 銀行委員會에서 公表한 各種 見解 및 解釋의 利用을 活性化하고 體系化한다. 또한 그동안 爭點이 되었던 條項, 事案 및 貿易環境의 變化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는 慣習 등을 要約·整理하여 每年 定期的으로 발간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補充資料로서 國際的으로 인정되고 이용할 수 있는 USCID에서 발간되는 ‘白書’와 같은 業務指針書를 발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書類의 一致性 與否를 判斷하는데 있어서 紛爭의 여지를 縮小시키

97) *Westpac Banking Corp. v. South Carolina Nat'l Bank*, (1986) 1 Lloyd's Rep. 311 (PC).

고, 時代的인 變化를 國際標準銀行慣習으로 迅速·適切하게 受容하여야 한다. 또한 本格的인 電子商去來에 대비하여 그 合理的인 活用과 그에 대한 問題點을 緻密하게 分析하여, 電子商去來時代에 있어서 效用있는 信用狀去來慣習으로 定着·發展시켜 國際貿易去來에 있어서 信用狀制度가 關係當事者間 國際去來의 特殊性을 克復하는 有用한 代金決濟手段으로 계속 發展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徐正斗, “信用狀去來에서의 一致性 判斷에 관한 ‘標準慣習’의 解釋”, 貿易商務研究 第 11 卷, 韓國貿易商務學會, 1998.
- 梁暎煥·吳元奭·徐正斗, 信用狀論, 三英社, 1997.
- 蔡鎮益, “信用狀의 書類審査基準으로서 國際標準銀行慣習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 講求論文, 成均館大學校, 1998.
- 東京銀行,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社, 1996.
- 新堀 聰, 貿易取引, 日本經濟新聞社, 1998.
- 浦野直義, 「金融法務事情」 第1371號, 1993
- Byrne, James E., “UCP 500 Explored: The Standard of Care in Documentary examination”, 7 *Letter of Credit Update* 6, 1991.
- Dolan, John 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 Warren, Gorham & Lamont, 1984.
- _____, *The Laws of Letter of Credit: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 Warren, Gorham & Lamont, 1996.
- Goode, Roy M., “Abstract Payment Undertaking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No. 1, 1996.
- Gustavus, Joseph D.,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114 *Banking Law Journal* 1, 1997.
- Jack, Raymond, *Documentary Credit*, Butterworths, 1993.
- Kozolchyk, Boris, Re UCP Article 13(a) and the ICC’s National Banking Practices Initiative”, 11 *Letter of Credit Update* 11, 1995.
- _____, “Towards New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The Methodology of the Proposed Revision”, *Commercial*

Law Annual, 1991.

- _____, "Strict Compliance and The Reasonable Document Checker", *Brooklyn Law Review*, Vol. 56, 1990
- _____, "The 'Best Practices' Approach to The Uniformit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The UCP 500 and The NAFTA Implementation Experience", *Arizon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13, 1996.
- _____, "The UNITROIT Principles as a Model for the Unification of the Best Contractual Practices in the America", *The American Journal of Compliance Law*, Vol. 46, 1998.
- Rosenblith, Robert M., "Current Development in Letters of Credit Law", *Uniform Commercial Law Journal*, Vol. 114, Warren, Gorham & Lamont Pub., June 1997.
- _____, "Letter of Credit Practice: Revisiting Ongoing Problems", *Uniform Commercial Law Journal*, Vol. 24, 1991.
- Schmitthoff, Clive M., *Schmitthoff's Export Trade*, Stevens & Sons, 9th ed., London, 1990.
- Wunnicke, Brooke, Wunnicke, Diane B., & Turner, Paul S., *Standby and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2nd ed., John Wiley & Sons, Inc., 1996.
- Black's Law Dictionary*, 6th ed., St. Paul, Minn., West Publishing Co., 1990.
- ICC,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 _____,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Publication No. 565, 1997.
- _____, *Decis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75-1979*, Pub. No. 371, 1980.

ABSTRACT

**The Judgment Standard of the Compliance of the Documents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Chae, Jin Ik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review of the judgement standard for compliance of the documents i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Since the establishment of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The practices of the Credit transactions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with the rapidly changing progress of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but though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have meaning to suggest a new examination standard, in practice, there are some problems on the judgement of the compliance of the documents.

Therefore, for the useful judgement standard for compliance of the documents, the range of the standard should become concrete and simple so that all the related parties can forecast. and the opinions and interpretations published by ICC Banking Committee are recommended to be used, systematized and activated. and also with the change of the trade environment, the changed standard practice could be published annually for the useful use. and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o publish the publications in the form of the "White Book"

Last,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changes by the needs of the times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promptly and analysis accurately its problems for the times of the electronic commerce, so that Credit systems should be settled and developed continuously as the useful means of the settlement of the proceeds conquering of the characteristics originated from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Key Words : Letter of Credit,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